

보도자료

(농림부)

- 제공일 : 2007년 1월 3일
- 제공자 : 농림부 여성정책과
- 과 장 : 김 미 숙
- 담 당 : 이 성 주
- 전 화 : 02-500-1605

이 자료는 2007년 1월 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 ①

제목 : 새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큰 폭 올라

- 최대 59.5% 인상, 만6세 취학유에아동 3천8백명도 혜택 -

□ 농림부는 올 한해 추진할 여성농업인 지원책을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라고 이름 짓고, 그 첫 번째 정책으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평균 37.2%, 최대 59.5%(만 3세의 경우) 인상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평균 4.2% 인상되고, 농림부가 지난해까지 정부보육료의 50%수준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 70%수준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결과다.

※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 만0세 361천원, 1세 317, 2세 262, 3세 180, 4~5세 162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연령별 월 지원액 인상내역

- 만0세 : ('06)월 17만5천원 → ('07) 25만3천원
- 만1세 : ('06)월 15만4천원 → ('07) 22만2천원
- 만2세 : ('06)월 12만7천원 → ('07) 18만3천원
- 만3세 : ('06)월 7만9천원 → ('07) 12만6천원

- 만4세 : ('06)월 7만9천원 → ('07) 11만3천원
- 만5세(취학유예 만6세아 포함) : ('06)월 15만8천원 → ('07) 16만2천원

○ 농림부는 또한 만6세('00.3.1~'01.2.28출생자)의 어린이가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대상(3천8백여명)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영유아에게도 지원을 확대했다.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농업인이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04년부터** 지원해 왔다.

- 지원조건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업인이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이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보육비 또는 교육비를 지원한다.

□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업인이 보육시설 등에 영유아를 보내지 못할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통한 가정육아비용 지원도 **지난해보다 평균 37.3%, 최대 59.5%(만3세의 경우) 인상했다.**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연령별 월 지원액 인상내역

- 만0세 : ('06)월 8만7천5백원 → ('07) 12만6천원
- 만1세 : ('06)월 7만7천원 → ('07) 11만1천원
- 만2세 : ('06)월 6만3천5백원 → ('07) 9만2천원
- 만3세 : ('06)월 3만9천5백원 → ('07) 6만3천원
- 만4세 : ('06)월 3만9천5백원 → ('07) 7만9천원
- 만5세(취학유예 만6세아 포함) : ('06)월 7만9천원 → ('07) 8만1천원

□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383억원에 비해 32.6% 인상된 총 508억원에 이르며, 영유아 양육비는 월 3만2천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월 4만6천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지원신청서'를 1월중에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에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지원금 청구는 연 1회 지원신청으로 같음하며,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 중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시설이용 실적 등에 따라 올해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농림부 박해상 차관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폭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 1,420개 읍·면중 476개 읍면(33.5%)

○ 한편, 농림부는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 후속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자료>

'07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단위 : 원)

연령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06(A)	'07(B)	증감액 (B-A)	%	'06(A')	'07(B')	증감액 (B'-A')	%
0세	175,000	253,000	78,000	44.6	87,500	126,000	38,500	44.0
1세	154,000	222,000	68,000	44.2	77,000	111,000	34,000	44.2
2세	127,000	183,000	56,000	44.1	63,500	92,000	28,500	44.9
3세	79,000	126,000	47,000	59.5	39,500	63,000	23,500	59.5
4세	79,000	113,000	34,000	43.0	39,500	57,000	17,500	44.3
5세	158,000	162,000	4,000	2.5	79,000	81,000	2,000	2.5
평균	128,670	176,500	47,830	37.2	64,330	88,330	24,000	37.3
취학유예	-	162,000	162,000	-	-	81,000	81,000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Q&A

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지원액을 신청하는 방법은?

답)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통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신청서식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활용)

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면적이 5ha미만으로 만5세 미만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보육시설 등에 다니지 않을 경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지원함

문)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지역이란?

- 농어촌지역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하며, 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함

※ 준농어촌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문)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거나 대상아동이 도시지역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양육비 및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의 부모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부모와 다르거나 도시지역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더라도 부모중 1인 이상이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문) '07년 3월 취학대상 아동('00.3.1~'01.2.28 출생아)이나 신체 발달 부진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가?

- '00.3.1~'01.2.28 출생아가 신체발달 부진 등으로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는 올해부터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원함

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시설인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유치원만을 말하며, 사설학원은 제외됨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제도

1.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 인상 배경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해 '04년부터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 경감
 -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여건을 고려하여 여성 농업인이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 확대

2.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업인의 만5세 이하 영유아(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 포함)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시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보육시설, 유치원을 미이용시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가정 육아비용 지원)
- ※ 농어촌지역 : 군 지역, 시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 ※ 준농어촌지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 다만 타부처(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3. 지원액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수준(5세이는 100%)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5% 수준(5세이는 50%)

(단위 : 원)

연령별	연령 기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월지급 한도액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월지급 한도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0세	'06.3.1 이후 출생	253,000	126,000	361,000
1세	'05.3.1 ~ '06.2.28	222,000	111,000	317,000
2세	'04.3.1 ~ '05.2.28	183,000	92,000	262,000
3세	'03.3.1 ~ '04.2.28	126,000	63,000	180,000
4세	'02.3.1 ~ '03.2.28	113,000	57,000	162,000
5세	'01.3.1 ~ '02.2.28	162,000	81,000	162,000
6세 (취학유예)	'00.3.1 ~ '01.2.28	162,000	81,000	

4. 신청절차

- ① 농업인 : 「지원신청서」를 작성,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 장에게 제출
-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 확인(농업인 등 여부, 보육시설 이용 여부 등)후 서명(날인)
- ③ 읍·면·동장
 - 해당 영유아의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조회
 -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지원대상자가 확정된 결과를 농업인 및 보육시설 등에 통지

④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중복지원여부 확인(시·군 사회복지부서, 시·군 교육청 협조)
-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후 읍·면·동에 통보
-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육실적통지서를 근거로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금 계좌입금(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읍·면·동에서 지급)

⑤ 보육시설 등

- 읍·면·동으로부터 농업인(신청인) 자녀의 시설이용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 지원대상 아동의 월별 보육실적 등을 읍·면·동장에게 통지

※ 연중 ‘영유아 양육비’ 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

5.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량	27	30	33	30
	사업비계	29,204	38,308	43,998	53,566
	국 비	14,602	19,154	21,999	26,783
	지방비	14,602	19,154	21,999	26,783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량	-	-	25	46
	사업비계	-	-	19,226	47,922
	국 비	-	-	9,613	23,961
	지방비	-	-	9,613	23,961

4. 향후 추진 계획

○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 확대

- 특히 농촌지역은 보육여건상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액을 영유아양육비 수준으로 인상
- 영유아 양육비도 75% 이상으로 인상

< 참고 >

지원대상 농업인 등 기준표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000㎡미만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소,말,젓소,사슴 : 70마리미만 - 돼지,개 : 1,000마리미만 - 산양, 면양 : 500마리 미만 - 토끼,친칠라,밍크: 10,000마리미만 - 가금 : 30,000마리미만 - 양봉 : 300군미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소유규모 1,000,000㎡미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90M/T이하동력선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수하(垂下), 연승(延繩) 10.0ha미만 ·살포(撒布), 투석(投石) 20.0ha미만 ·가두리 2.0ha미만 ·축제식 10.0ha미만 ·육상수조식 0.2ha미만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48,000㎡ 소유, 소 65마리 및 돼지 9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